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에 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(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9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 대비표, 별첨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3제4항 중 “금융소비자정책과·서민금융과·가계금융과·자본시장과·자산운용”을 “금융소비자정책과·서민금융과·가계금융과·청년금융생활지원과·자본시장과·자산운용”으로, “금융소비자정책과장·서민금융과장 및 가계금융과장”을 “금융소비자정책과장·서민금융과장·가계금융과장 및 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력·조정
3.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
4.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 소통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7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
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제4장의2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1조(평가대상 조직)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21”을 “22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19”를 “223”으로 하며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9”를 “10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및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22”를 각각 “23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“6”을 “7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21”을 “22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19”를 “223”으로 하며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10”을 “11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1”을 “22”로 하며,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23”을 “24”로 하고,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“7”을 “8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1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금융소비자국 청년금융생활지원과	4명 (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	2024년 3월 31일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·서민금융과·가계금융과·자본시장과·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되, 금융소비자정책과장·서민금융과장 및 가계금융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자본시장과장·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</u>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금융소비자정책과·서민금융과·가계금융과·청년금융생활지원과·자본시장과·자산운용----- 금융소비자정책과장·서민금융과장·가계금융과장 및 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<u>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</u>에 관한 사항 2. <u>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력·조정</u> 3. <u>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</u> 4. <u>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실태</u>

조사 및 현장 소통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7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⑨ ~ ⑪ (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

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1조(평가대상 조직)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.

⑧ ~ ⑩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	정	안	증	감
		·		·		·			
총			<u>221</u>		<u>225</u>			+4	
		·		·		·			
		·		·		·			
일			<u>219</u>		<u>223</u>			+4	
		·		·		·			
		·		·		·			
서			<u>9</u>		<u>10</u>			+1	
		·		·		·			
		·		·		·			
행			<u>22</u>		<u>23</u>			+1	
전									
		·		·		·			
		·		·		·			
행			<u>22</u>		<u>23</u>			+1	
		·		·		·			
		·		·		·			

행정주사보	또는	<u>6</u>	<u>7</u>	+1
전산주사보				
·		·	·	
·		·	·	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• <u>221</u>	• <u>225</u>	+4
일반직 계	• <u>219</u>	• <u>223</u>	+4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• <u>10</u>	• <u>11</u>	+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• <u>21</u>	• <u>22</u>	+1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• <u>23</u>	• <u>24</u>	+1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• <u>7</u>	• <u>8</u>	+1

	.	.	.	
	.	.	.	